

5.1.20 교육효과분석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7. 09. 14.

개정 2018. 03. 14.

개정 2018. 10. 23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38조 제1항 16호에 의거하여 초당대학교 교육효과 분석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목적) 센터는 대학의 교육성과, 교수 및 학습역량 진단, 교내외 교육서비스 조사, 분석, 연구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관업무) 센터는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.

1.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측정도구의 개발 및 활용
2. 효율적 교육모델의 수립 및 개선
3. 학습역량 및 교수역량의 진단 및 분석
4. 교내 및 교외 교육서비스 조사 및 분석
5. 기타 센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 (조직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,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목적사업 실행에 관한 사항
3. 규정 및 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
4.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6조 (회의 개최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내용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 및 학과의 업무관련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7조 (시행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0.23>

제8조 <삭제 2018.03.14>

제9조 <삭제 2018.03.14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